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,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여 행정서류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행적 서류요구 최소화,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면제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 호

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

제1조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5조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)

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

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)

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)

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서식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서식 제4호를 삭제한다.

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)

제2조(「기상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

2. 강사 현황(강사의 자격·경력 및 정원)

3. 시설 및 장비의 개요

4. 교육평가방법

5. 연간교육계획

제3조(「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「기상산업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

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이하 “행정정보의 공동이용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”를 “2장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기상법」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(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[]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[]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신청인 (신고인)	성명(대표자) 주소	생년월일 전화번호	
사무소	상호(단체명)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기상사업등록번호	기상사업등록일	
	등록업종		
신청(신고) 내용	변경 전		
	변경 후		
	변경 사유		

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[] 변경등록을 신청
[]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
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기상사업 등록증(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(신고서) 작성 신청인(신고인)	→	접수 기상청 (사업자담당부서)	→	검토 기상청 (사업자담당부서)	→	결재 기상청 (사업자담당부서)	→	등록증 재발급 (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함) 기상청 (사업자담당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] 기상예보사
[]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성명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	
	근무처		
자격	자격 종목 및 등급	자격번호	
	자격 취득	자격증 발급기관	
경력	근무기관	근무기간	
교육	교육과정명	이수번호	
	교육기관	교육기간	

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

[] 기상예보사, []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신청인	1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.5cm, 세로 4.5cm 인 것을 말합니다) 2장	수수료 (수업인지)
제출서류	2.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(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 1부	
담당공무원	1. 국가기술자격증 (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)	5천원
확인사항	2.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(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) 1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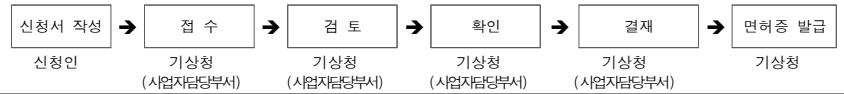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팩스번호	전자우편 주소	
	대표자 주소		
	사무소 소재지		
	검정 분야		
	업무 개시일		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

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신청인	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(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포함) 1부	수수료
제출서류		
담당공무원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없음
확인사항	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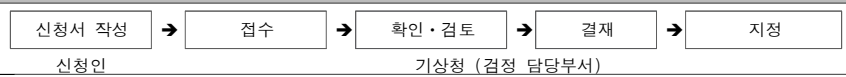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5(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6조의5(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2.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.)
3.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유 또는 공동활용·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,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)	
4.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	

다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5. 사업계획서	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) ① (생략)	제11조(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
2.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2. 사업계획서(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」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.)
3.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	
가.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측기의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	

류 나.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유 또는 공동활용·임차한 장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) 4. 삭 제 5. 사업계획서 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

기상법 시행규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삭 제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. 강사 현황(강사의 자격·경력 및 정원) 3.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. 교육평가방법 5. 연간교육계획 6. 교육규정 ③ ~ ⑥ (생 략)	제16조(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. 강사 현황(강사의 자격·경력 및 정원) 3.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. 교육평가방법 5. 연간교육계획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기상예보업 등의 등록) ① 「기상산업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. 관측시설 명세서(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② ~ ④ (생략)	제2조(기상예보업 등의 등록) ① 「기상산업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) ① (생략) <신설>	제3조(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이하 “행정정보의

② (생략) 제10조(면허의 신청)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: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(생략) <신설> ③ (생략)	공동이용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0조(면허의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 2장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기상법」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	--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

시행규칙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3(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② ~ ④ (생략)	제3조의3(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)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서”라 한다)에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